

- 자격명: 관광통역안내사
- 영문명: Tourist Guide
-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기간
1 회 필기	02.22~03.03	2016.02.22~2016.03.0 2	2016.04.09	05.04~07.03
1 회 면접	02.22~03.03		2016.05.28~2016.05.2 9	06.15~08.14
2 회 필기	07.25~08.03	2016.07.25~2016.08.0 2	2016.09.03	10.05~12.04
2 회 면접	~		2016.11.12~2016.11.1 3	12.07~2017.02.06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 38 조제 5 항(동법 제 7 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관광통역안내사 결격사유자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1. 국사(근현대사 포함) 2. 관광자원해설	25	40% 20%	50 분 (0930~1020)	객관식 4지택일형
	2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25	20% 20%	50 분 (1050~1140)	
제2차시험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 인당 10~15 분 내외	면접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 공인어학성적기준

영어	TOEIC	TEPS	TOEFL		G-TELP (Level 2)	FLEX	PELT (main)
			CBT	IBT			
	760점 이상	677점 이상	217점 이상	81점 이상	74점 이상	776점 이상	345점 이상

일본어	JPT	일검(NIKKEN)	FLEX	JLPT
	740점 이상	750점 이상	776점 이상	N1 이상

중국어	HSK	FLEX	BCT		CPT	TOP (TOCEL)
	5급 이상	776점 이상	4급 이상	듣기/읽기 601점 이상	듣기/읽기/쓰기 181점 이상	750점 이상

기타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FLEX	DELFB	FLEX	독일어학능력시험	FLEX	DELFB	FLEX	TORFL	CILS	CELI
	776점 이상	DELFB2 이상	776점 이상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776점 이상	Diploma Intermedio 이상	776점 이상	1단계 이상	Livello Due-B2 이상	CELI 3 이상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외국어시험, 일부과목, 필기시험 면제 근거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 2) 관광안내실무 : 20%
- 3) 관광자원안내실습 : 50%

□ 응시수수료(관광진흥법 제 79 조)

1, 2 차 통합: 20,000 원

인터넷 등록

<http://www.q-net.or.kr/>